



기업용

2024 관광일자리 인턴매칭 지원사업

모집공고



I .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4 관광일자리 인턴매칭 지원사업
- 사업내용: 부산 소재 구직자에게 관광분야 일자리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며 부산지역 관광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에 기여
- 모집대상
 - 기업: 부산관광스타트업(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우선 선발)
 - 참여자: 부산 소재 대학생 및 졸업자 등 부산시 거주 관광분야 구직자
(고용상태: 미취업자)
- 지원규모: 30개사-30명(예정)
- 지원내용: 인턴 급여 80% 지원(최대 월 160만원)
 - 기업 20% 부담, 4대 보험료 기업 부담분 별도, 최대 월 160만원 지원
 - 최저임금(9,860원) 보장 및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 준수 필수
- 지원기간: 6월 ~ 10월 중 3개월 지원금 지급
 - ※ 기업별 매칭 기간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
- 신청방법: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접수항목 작성 및 제출
- 추진일정(안)

추진일정	추진 내용
4.16(화)~4.28(일)	기업 신청서 접수
4.29(월)~5.10(금)	참여자 공고 및 모집
5.13(월)~5.17(금)	기업별 참여자 서류 심사(기업-참여자 매칭 작업)
5.21(화)	기업-참여자 1:1 면접 진행(취업박람회 연계)
5.22(수)~5.31(금)	기업-참여자 매칭 심사
6.1(토)	인턴십 시작

※ 상기 일정은 채용 계획 변경 및 재공고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II. 세부계획

□ 기업모집

- 모집대상: 부산관광스타트업 ※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우선 선발
- 참여자(인턴) 4대보험 가입 필수
 - 사업자등록증 필수(예비 스타트업일 경우 확인 필요)
 -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- | |
|---|
| ①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|
| ②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(근로자가 근무 예정 사업장에 과거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) |
| ③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|
| ④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|
| ⑤ 『근로기준법』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|
| 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|
|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기업 |

□ 선발과정

일정	선발단계	비고
4.22(월)~5.10(금)	접수	• 참여자 신청서류 접수
5.13(월)~5.17(금)	서류검토	• 참여자 희망기업에 이력서 발송
5.18(목)~5.19(금)	1차 합격	• 참여자 1차 서류 합격 안내 (참여자 2차 1:1면접 안내)
5.21(화)	1:1 면접	• 1:1 오픈면접 (기업-참여자, 20분 내외)
6.1(토)~	근무시작	•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시작(3개월간)

※ 상기 일정은 채용 계획 변경 및 재공고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※ 기업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채용하거나 당초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

※ 상기 일정은 채용 계획 변경 및 재공고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II. 세부계획

□ 근로조건

- 근무기간: 6월 ~ 10월 중 3개월간(매칭 기업에 따라 근무 기간 상이)
- 근무장소: 기업-참여자 간 협의(단, 현실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장소, 재택불가)
- 근무내용
 - 기업소개서에 따른 직무 관련 업무
 - 인턴 교육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안전관리
- 근로계약
 - 근로계약서 체결
 - 인턴매칭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참여자는 아래 직무에 해당해서는 안 됨

- ①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 파견 또는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
 - ② 전화·방문고객 단순상담
 - ③ 커피점·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·판매
 - ④ 건설·생산현장 등에서 단순노무
 - ⑤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어 청년이 수행할 수 없는 일자리
 - ⑥ 기타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

- 근로시간
 - 주 5일, 1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무
 - ※ 「근로기준법」을 따르며, 세부 근무조건은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 - 근로 시간 조정 시 사업 참여자(기업, 근로자) 간의 사전협의가 필요
 - 야근 및 초과 근무 금지. 단, 참여자(인턴)와 기업의 협의에 의해 가능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기업에서 지급하여야 함
- 근로임금
 - 급여일은 각 기업에서 지정하는 날 참여자 개인 통장으로 지급
 - 인건비 지급의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만근이 아닐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
(지원금 = {(월 급여 ÷ 해당 월의 일) X 근무일수} X 80%)

□ 지원금 지급

- 기업은 인턴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(시급 9,860원) 이상의 금액을 지급
 공사는 월 금액의 최대 160만원을 지원 예정
- 기업이 인턴에게 선 지급 후 공사에서 기업에게 지원금 지급
- 기업은 4대보험(산재보험 포함) 가입 필수
 -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및 상용임금 제외 기타 제수당은 기업에서 자체부담

예) · 시급 9,860원, 209시간 적용 시 1개월 실습지원비 : 2,060,740원
· 공사지원금액: 월 임금의 80% 상당 지원(최대 160만원)
※ 인턴 1명 월 실습비 2,060,740원으로 산정하는 경우, 공사 월 1,600,000원 지원
· 월 만근이 아닐 경우: {(월 급여 ÷ 해당 월의 일) X 근무일수} X 80%

□ 중도포기자 발생의 경우

- 중도포기자 발생시 해당 기업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함
- 매칭 후 후순위 명부(2배수) 인력풀 구성
- 중도포기자 발생시 해당 기업 사업 참여 자격 박탈
- 해당 사업을 위해 구성된 인력풀이 취업, 이탈, 포기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기업의 인력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동으로 선발, 채용 가능
- 권고사직, 해고 및 청년의 자발퇴사를 종용하는 등 청년 퇴사의 귀책이 기업에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즉시 중단함
- 본 사업을 통해 해당 기업에 재직하다 퇴사한 청년으로 인해 발생한 민·형사상 분쟁의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

□ 유의사항

- 근로자가 근무 예정 사업장에 과거 4대 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- 기업은 인턴에게 교육적 역할 의무를 다하고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
- 기업은 공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출 필요
- 참여기업은 근로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며,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

-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 변조 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
-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(중복수혜 불가)

III. 요청사항

□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: 4.1(월)~4.12(금)
- 신청방법: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접수항목 작성
 - 기업 수요 및 선호도에 적합한 청년 인재 모집 위해 희망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작성(예: 관광학과 전공자, 외국어 능통자, IT기술 보유자, 운전면허 소지자 등)

□ 문의사항

-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강민승 주임 (☎ 051-715-3276)
- 2024 인턴매칭 지원사업 운영사무국 (☎ 051-715-4888)